

장애인 ·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
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이명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510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2. 9.

발의자 : 이명수 · 권석창 · 홍문표

함진규 · 정태옥 · 박인숙

한선교 · 경대수 · 박찬우

성일종 · 강효상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「마약법」, 「대마관리법」, 「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」은
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6146호. 2000. 1. 12.)이 제정되면
서 폐지된 상태임. 그러나 현행법 제16조제4호에서 여전히 폐지된 법
률로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.

따라서 제16조제4호의 “「마약법」, 「대마관리법」, 「향정신성의
약품 관리법」”을 “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”로 개정하여 혼란을
없애고자 함(안 제16조제4호).

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
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4호 중 “「마약법」, 「대마관리법」, 「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」”을 “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6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공학사가 될 수 없다.</p> <p>1. ~ 3. (생 략)</p> <p>4. 이 법이나 「형법」 제234 조·제317조제1항, 「의료법」, 「국민건강보험법」, 종전의 「국민의료보험법」, 「의료 보험법」, 「의료보호법」, 「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」, 「마약법」, 「대마 관리법」, 「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」 또는 「후천성면역 결핍증 예방법」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</p>	<p>제16조(결격사유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,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